

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극행정이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 징계 감경하고 징계사유가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극행정행위가 엄중 문책 대상임을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규정함

나.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규정(안 별표1)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한 경우 ‘성실의 의무 위반’ 비위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징계양정기준을 명시함

다. 소극행정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4조제1항)

징계사유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인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명시

라.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 확대(안 제4조제1항제2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감경 적용 대상 포상 공적을 중앙행정 기관인 청장(차관급 포함) 이상의 표창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향후 조치

3) 행정규제 : 향후 조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물어야”를 “물어야 하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반”을 “위반에 대한 징계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국무총리”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를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 인 권리침해 다.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 라. 회계질서 문란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고발 의무 불이행 바.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 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				

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 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 밀 침해 및 비밀유 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 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2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 력 등에 의한 성폭 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 력)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라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의 3과 같다.
5.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 략)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u>물어야</u> 한다.	② ----- ----- ----- ----- ----- ----- ----- ----- ----- ----- ----- <u>물어야 하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징계의 감경) ① ----- ----- ----- -----

위반에 대한 징계 및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 (현행과 같음)
2. -----

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
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
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
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생략)

② (생략)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
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
- 해당한다.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